

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3. 13.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등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협의
-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 마. 심사예고 : 생략
- 라. 기타
 - 1) 조례안 : 붙임
 - 2)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
 - 3) 비용추계서 : 붙임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등에 관련계획 및 자료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①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임실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제5조(생산품우선구매), 제6조(사무위탁)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따른 비용

나. 추계 결과

1,264,426천원/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년도	대상자 수	월지급액	총 예산	증감액
2014	618	-	1,222,870	
2015	518	-	1,264,426	증 41,556

※ 금년도 대비 전년도 대상자수가 많은 사유는 추경예산 확보로 지원이 증가됨.

3. 재원조달방안

2015년도 본예산에 1,264,426예산편성 (국 41%, 도17%, 군42%)

4. 작성자

의회 사무과장 정희석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서 1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1,264,426	1,264,426	1,264,426	1,264,426	5,057,704
세 출		1,264,426	1,264,426	1,264,426	1,264,426	5,057,704
		노인일자리 1,054,426 (인건비,부대경비)	노인일자리 1,054,426 (인건비,부대경비)	노인일자리 1,054,426 (인건비,부대경비)	노인일자리 1,054,426 (인건비,부대경비)	
		시니어클럽 210,000(운영인건)	시니어클럽 210,000(운영인건)	시니어클럽 210,000(운영인건)	시니어클럽 210,000(운영인건)	
재원 조달		1,264,426	1,264,426	1,264,426	1,264,426	5,057,704
의존 재원	소 계	732,963	764,463	764,463	764,463	3,026,352
	보조금	732,963	764,463	764,463	764,463	3,026,352
	지방교부세					
	군비					
자체 수입	소 계	531,463	499,963	499,963	499,963	2,031,352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531,463	499,963	499,963	499,963	2,031,352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